

1. 개정이유

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,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(이하 “당사회사”라 한다)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, 영공통과 이용권, 운항시각(이하 “운수권 등”이라 한다)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,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·복원을 촉진하고,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,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,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 신설)
- 나.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,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,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, 제21조

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사업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반납) ①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수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.

1. 배분받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

② 항공사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배분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의 세부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20조(종전의 제19조) 제1항 본문 중 “회수된”을 “회수되거나 제19조제

1항에 따라 반납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회수된”을 “회수되거나 반납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납되거나 제21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반납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납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배분이 철회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최초 반납한 항공사에게 재배분 할 수 있다.

제21조(종전의 제20조)제1항 중 “제19조제1항”을 “제20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9조</u>(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<u>회수된</u>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. 다만,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<u>회수된</u>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.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<u>제20조</u>(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) ① ----- <u>회수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반납된</u> ----- ----- -----. <u>회수되거나 반납한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납되거나 제21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<u>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.</u>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1항제2호의 반납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납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배분이 철회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최초 반납한 항공사에게 재배분 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반납) ①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수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.

1. 배분받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
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

② 항공사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

제20조(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)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운항을 하고, 그 시점부터 4주간 연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하여 재배분된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

반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배분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의 세부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21조(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) ① 제20조제1항-----

--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

③ ----- 제1항 및 제2항-----

회수할 수 있다.

-----.